

서울지회, 2004년 안전기원 등반 대회 가져



2004년 5월 7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는 5월 일례교육과 겸하여 관내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소요산에서 “2004년 안전기원 등반대회”를 가졌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의 기원과 안전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번 등반대회는 80여개의 회원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안전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자리” 였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회, 산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가져

부산지회에서는 금정산 일대 등산로(만덕~동래산성 남문~동래산성 동문~산성마을)에서 부산지방노동청 및 동래·북부·양산노동사무소를 비롯하여 회원사 안전관리자등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선언문 낭독, 산재예방 결의대회 등을 갖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후에는 친목도모를 위한 족구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원지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견학 및 세미나 가져



강원지회는 지난 4월 27, 28일 양일간에 걸쳐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조선소에 위치한 (주)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견학 및 세미나를 가졌다.

회원의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안전 관리 실태가 우수한 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업무복귀 후 적극적인 무재해운동 실시와 활동을 피하고자 실시된 이번 견학은 회원간 정보교류는 물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전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중앙회, 건설안전점검 컨설팅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

협회 중앙회에서는 재해예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4월 28~30일 3일간에 걸쳐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건설안전점검 컨설팅 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가졌다.

건설안전점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컨설팅의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업무추진사항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변화되고 있는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해 주고 내적으로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사례와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수료 후업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철도사고예방 각종 방안 마련

최근늘고있는철도사고를줄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이 각종방안을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2009년까지 철도사고를 현재 사망자수의 80%이상 감소시킬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철도청은 수도권외의 모든 전철구간에 선로안으로 승객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가 약 900여억원을 투입해 실시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시설결함, 인적오류,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활동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 중심으로 추진된다.

건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철도사망자수가 50명 이하로 줄고 중대열차사고율도 절반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청은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수도권 국철 65개역 가운데 승객이용이 많은 17개역에 올해안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할 방침이며 나머지 48개역도 내년안에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신길역에서 시범운영중인 안전스크린 도어도 해마다 10곳씩 설치하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넓어 승객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26개역에 2006년 말까지 안전발판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내 영상감시장치기능 보강과 승강장 안전요원 배치 늘리는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로울러기 자체검사기준 마련

로울러기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세부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합격판정기준 등이 각각 신설됐다.

노동부는 최근 '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규정 중 개정안'을 통해 로울러기 자체검사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울러기의 외관 및 설치상태, 주요 기계구조부, 안전장치,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 나뉜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이 각각 정해졌다.

이는 내년부터 산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및 부칙에 의해 사업주에게 로울러기에 대한 자체검사의무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로울러기를 사용한 가공이나 점검, 보수 등의 작업시 산재가 유발됨을 지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자체검사 대상에 로울러기를 포함시킨 바 있다. 